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1~2월 9만여 명 신청, 건강한 임신 준비 청신호

-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부부 적극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중 지난 2024년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사업 첫해에는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업 첫해에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하였다. 이에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 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5년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대상·횟수 확대 실시>

이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임신 준비 부부▶ (횟수) 생애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결혼 여부·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 (횟수) 최대 3회(주요 가임 주기별 1회) <p>*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p>

한편,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①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2024년 1월~), ②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2024년 11월~), ③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기존50%→개선30%, 2024년 11월~) 등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생아 현황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생아수(A,명)	272,337	260,562	249,000	235,039
난임지원 출생아수(B,명)	17,720	21,219	23,122	26,612
비율(B/A,%)	7%	8%	9%	11%

정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2024년 52.5%로 2.5%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4년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향후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사무관	강예나 (044-202-3403)

붙임 1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추진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 3-3 아이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 ① 건강한 임신 지원 확대

- (사업대상)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6개 시도, 임신 계획 부부(24) → 전국 17개 시도, 가임기 남녀(25)

- (지원내용)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가임력 검사** 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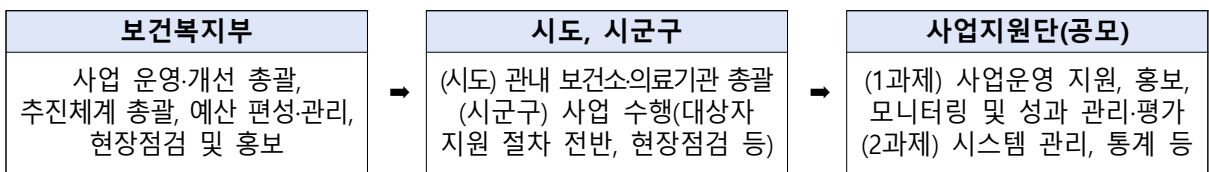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연령대)별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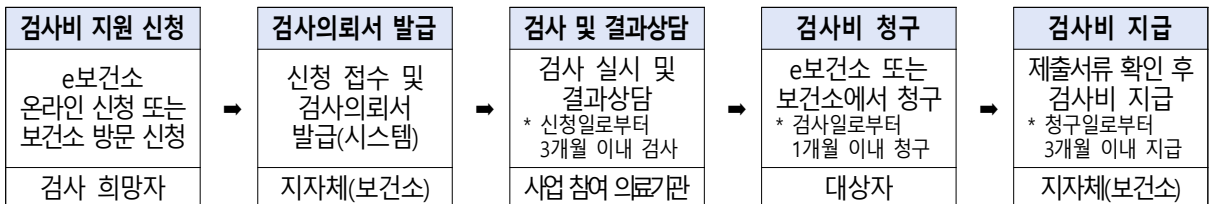
- (제1주기) 결혼 전 생식건강관리(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및 난임 예방 목적
- (제2주기) 본격적 결혼 및 임신·출산 계획 단계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및 난임 예방 및 가임력 보존 목적
- (제3주기)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 필수 검사항목: (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남)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추진체계) 복지부, 시도·시군구, 사업지원단(공모) 등 역할 분담



- (지원절차)



- (소요재원) 검사비 193억 원(국비 88억 원), 운영비 2억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일부 등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 (사업경과 및 현황) '06. 시작, '22.~ 지방이양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소득 무관)
- (지원내용)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보편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원
 - (범위) 신선배아·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3종
 - (금액)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해당하는 금액 한도
 -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2025년 난임시술비 지원 현황**

구 분 (예시: 건보급여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	건강보험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부담액(1회당)	지원액(1회당 상한액)
			연령구분 폐지 (건보부담율: 70%)	연령구분 폐지 (동일 지원)
체외 수정	신선배아 (300만원)	20회	21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120만원)		84만원	50만원
인공수정 (60만원)		5회	42만원	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지원